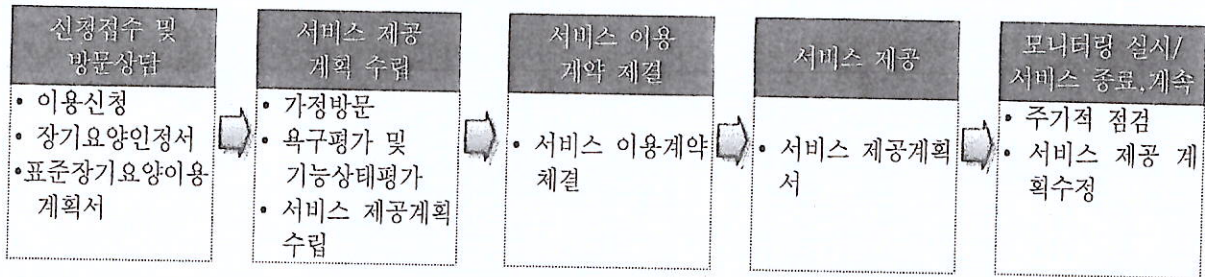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23조 [이용 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24조 [이용자 모집방법]

온라인을 통한 모집방법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모집방법으로는 전단지 홍보, 현수막 부착 등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전단지 홍보지, 현수막 부착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관계기관 연계 협력,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25조 [급여종류]

이용 가능한 급여는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6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7조 [계약목적]

1. 기관과 수급자간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8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는 이용자 및 법적대리인이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30조 [월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 9%) 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31조 [기타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서비스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 및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갑”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을”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병”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3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 지급이 지연되어 상호간 신뢰관계 문제에 ‘갑’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5조 [월 이용료 납부]

1. “갑”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정산하여 “을” 또는 “병”에게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2. “을” 또는 “병”은 매월 이용료를 “갑”이 지정한 계좌로 10일 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갑”은 “을” 또는 “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3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2” 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

급여비용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에 따른다.